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8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0.

발 의 자 : 전진숙 · 이수진 · 남인순
정준호 · 안호영 · 손 솔
김종민 · 김남희 · 이인영
허종식 · 이정문 · 김정호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보육지원체계는 국적 및 주민등록을 전제로 설계되어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영유아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, 지방자치단체 개별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.

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‘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’(2019.05.)한 바 있고, UN아동권리위원회는 이주아동 등이 출생등록·보육·교육 등에 있어서 지원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·관행적 장벽을 없앨 것을 권고(2019.10.)한 바 있음.

또한,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 지원 방안에 대한 조치로 「2026년 교육부 보육사업안내」는 ‘보호자가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

호를 부여하여 지원이 가능'하다고 안내하고 있음.

이에 영유아 및 부모의 국적, 혼인,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
보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보육 이념을 정비하고, 대한민국 국민
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가 완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
이라 하더라도 무상보육 대상이 되고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
함으로써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
것임(안 제3조제3항 및 제34조의8 신설).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인종”을 “인종, 국적, 혼인, 체류자격”으로 한다.

제3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8(외국 국적 혼인 외의 출생자의 무상보육 등에 관한 특례)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민법」 제855조 또는 제855조의2에 따라
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출생자로 인지되거나 대한민국 국민
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소를 제기하여 승
소의 확정판결(조정·화해를 포함한다)을 받은 외국 국적의 영유아
에게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
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보육 이념) ① · ② (생략)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, <u>인종</u>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. <u><신 설></u>	제3조(보육 이념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인종, 국적, 혼인, 체류자격</u> ----- ----- -----. <u>제34조의8(외국 국적 혼인 외의 출생자의 무상보육 등에 관한 특례)</u>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민법」 제855조 또는 제855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출생자로 인지되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(조정·화해를 포함한다)을 받은 외국 국적의 영유아에게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